

연구원 임용에 관한 규정

2005.09.01. 제정
2010.11.01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) 연구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원 구분) ①연구원은 책임연구원,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.
②재원에 따라 교비연구원, 기금연구원 및 무급연구원으로 구분한다.
③전임연구원 외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자격) 연구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책임연구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 다만, 석사과정 중에 있는 자로서 영어교육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④기금연구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되,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임용한다.
- ⑤객원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1. 국내·외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이상인 자
 2. 삭제
 3. 석사학위 이상의 사회 저명인사 또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

제4조(정원) 연구원의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임용절차) 연구원은 각 부서장(부설기관 포함)의 추천을 받아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고,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
②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7조(직무) 연구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본교의 학칙에 명시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.
- ②본교의 교원이 수행하는 학내 연구과제 또는 외부 수탁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본교의 발전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관련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다.

제8조(임용서류 및 주관 부서) ①연구원의 신규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기소개서 1부
2. 연구계획서 1부
3. 이력서 1부
4. 학력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
5. 경력증명서 1부
6. 주민등록등본 1부 (외국인일 경우 여권,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)
7. 기타 총장이 정하는 구비서류

②연구원 임용 및 위촉의 주관 부서는 소속기관으로 한다.

제9조(처우) ①유급 연구원의 보수는 임용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

②무급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

③유급연구원은 계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.

제10조(겸직제한) 전임연구원은 외부기관의 전임을 겸직할 수 없다. 다만 무급 연구원은 예외로 한다. 전임연구원이 비전임직으로 출강하거나 비상임직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(평가) 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평가하고, 이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.

제12조(징계) 연구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해임) 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
2. 제7조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
3. 신체, 정신 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
4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
5.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할 때
6. 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비로 연구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
7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할 때

제14조(준용 및 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,

학교법인 혁제학원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